

영등포구의회
제16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5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50호로 2011년 4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기금명 변경 등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(안 제4조)
- 나.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기금명 변경(안 제5조제4호, 제6조제4호)
- 다. 법제처에서 정한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문구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7조제1항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2006. 3. 9일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」의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와 「동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서 그 존속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함.
- 안 제5조제4호에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“지역발전협력기금”을 “지역상생발전기금”으로 인용 기금명칭을 변경 함.
- 기타 부분은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제16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(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특별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(相生)발전을 지원하고,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(이하 "발전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<개정 2010.1.1>

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3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4 통합관리기금 운영 실적

■ 통합관리기금 운영 실적(기금 조성액)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	사업계획	사업실적	용자실적	비 고
2007	14,903	15,336	-	
2008	19,110	12,957	5,100	
2009	22,103	18,630	5,000	
2010	6,383	5,852	14,300	